

'2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자체선발기준 [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]

1.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

□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

-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및 추가학기 등록(예정)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장학 사업 신청자
- * 기본요건: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지원구간 9분위이하 학 인자 (봉사유형은 학자금지원구간 제한 없음)
- *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, 선발 불가
- * 해당학기 정상이수한 휴학자의 경우(해당학기 정상 학생 성적이 산출된 학생이 휴학을 한 경우) 다음학기를 위한 선휴학으로 간주하여 근로장학생 선발 가능
- *

□ 세부 선발기준

- 1) 일반교내, 일반교외 근로: 배점방식
 - 선발기준: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
 - 배점기준

기준	배점	세부내용			
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	25점	• 당해학기 학자금지원구간(소득분위)이 산정된 학생 대상 • 한국장학재단의 우선선발기준을 고려			
		[소득구간 점수표]			
		소득 구간	4분위 이하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포함)	5분위 이상 ~7분위 이하	8분위 이상 ~9분위 이하
		점수	25	20	15
면접	10점	• 근로기관 담당자가 희망기관 신청학생에 한해서 면접 진행 • 면접내용: 근로가능시간, 업무요구능력확인 등 • 점수: 10점 ~ 0점 • 면접 일자 및 면접 방법 등은 근로기관에서 정함(집중근로 제 외) • 집중근로의 경우, 지원동기를 통하여 학교에서 점수를 산정 함			

		• 면접 미 참여, 불성실 태도, 근로에 적합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0점 (면접 점수가 0점인 경우 선발불가)														
백분위 성적	10점	•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을 사용(계절학기 제외) •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,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사용(계절학기 제외) [성적 점수표] <table><tr><td>백분위 성적</td><td>100-95</td><td>94-90</td><td>89-85</td><td>84-80</td><td>79~75</td><td>74~70 신·편입생. 재입학생</td></tr><tr><td>점수</td><td>10</td><td>9</td><td>8</td><td>7</td><td>6</td><td>5</td></tr></table>	백분위 성적	100-95	94-90	89-85	84-80	79~75	74~70 신·편입생. 재입학생	점수	10	9	8	7	6	5
백분위 성적	100-95	94-90	89-85	84-80	79~75	74~70 신·편입생. 재입학생										
점수	10	9	8	7	6	5										
직전학기 선발여부	5점	• 한국장학재단 권고사항에 따른 배점 (권고사항: 직전학기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 60%이상 선발) [직전학기 선발여부 점수표] <table><tr><td>직전학기 선발여부</td><td>직전학기 미선발자</td><td>직전학기 선발자</td></tr><tr><td>점수</td><td>5</td><td>3</td></tr></table>	직전학기 선발여부	직전학기 미선발자	직전학기 선발자	점수	5	3								
직전학기 선발여부	직전학기 미선발자	직전학기 선발자														
점수	5	3														
• 총 50점 만점 • 합산 점수가 같은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→ 면접 → 성적 → 직전학기 선발여부 순으로 점수가 높은 학생 선발																

- 희망근로기관신청 마감일까지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에 한하여 선발 절차 진행
- 대체 및 추가 장학생 선발기준
 -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, 희망근로기관신청을 받아 선발기준에 준용하여 선발
 - 희망근로기관신청인원이 없는 등의 상황인 경우, 국가근로 신청 학생 중 직접 연락하여 선발 가능

2) 봉사유형(장애대학생 지원) : 배점방식

- 선발기준: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
- 배점기준

기준	배점	세 부 내 용											
장애 학생 직접 추천	30점	장애학생이 직접 추천 [장애학생 직접추천 점수표] <table> <tr> <td>추천</td> <td>직접추천학생</td> <td colspan="2">그 외 학생</td> </tr> <tr> <td>점수</td> <td>30</td> <td colspan="2">15</td> </tr> </table>				추천	직접추천학생	그 외 학생		점수	30	15	
추천	직접추천학생	그 외 학생											
점수	30	15											
면접	10점	- 장애의 유형 및 특성을 잘 이해하고,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으며,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선발 - 점수: 10점 ~ 0점 -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면접을 통해 점수 부여 - 면접일정, 방법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결정 - 장애학생과 동일과목 수강 시 우선 선발 - 면접 미 참여, 불성실 태도, 근로에 적합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0점 (면접 점수가 0점인 경우 선발불가) [전공 점수표] <table> <tr> <td>전공</td> <td>장애학생과 동일학과</td> <td>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</td> <td>장애학생과 다른학과</td> </tr> <tr> <td>점수</td> <td>5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/table>				전공	장애학생과 동일학과	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	장애학생과 다른학과	점수	5	3	1
전공	장애학생과 동일학과	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	장애학생과 다른학과										
점수	5	3	1										
성별	5점	- 동성 학생 우선매칭 - 이성 학생의 경우, 장애학생에게 동의여부 확인 후 선발 - 장애학생이 이성 학생의 도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선발 불가 - 봉사유형 신청학생이 이성 장애학생의 도우미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발 불가 [성별 점수표] <table> <tr> <td>전공</td> <td>장애학생과 동성</td> <td>장애학생과 이성 (장애학생 및 봉사학생의 동의)</td> </tr> <tr> <td>점수</td> <td>5</td> <td>2</td> </tr> </table>				전공	장애학생과 동성	장애학생과 이성 (장애학생 및 봉사학생의 동의)	점수	5	2		
전공	장애학생과 동성	장애학생과 이성 (장애학생 및 봉사학생의 동의)											
점수	5	2											
- 총 50점 만점 - 총 점수가 같은 경우 장애학생 직접추천을 받은 학생 선발													

○ 대체 및 추가 장학생 선발기준

- 선발된 근로 장학생의 활동 중단 및 장애학생의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장애대학생의 직접 추천 또는, 국가근로 기본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기준에 준용하여 선발진행

2.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

□ 근로장학생 활동관리

- 사전교육: 9월 초 예정 (자세한 일정은 선발 후 미래학생복지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)
 - 국가근로 진행절차 안내 및 출근부 작성 방법 설명
 - 부정근로 방지 교육, 장학생 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교육
 - 사전교육 참석 시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가능하며, 미 참석 시 근로 취소 가능
- 근로지변경
 - 형사사건 연루, 성희롱,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당한 경우 희망근로지 최초/추가신청 기간 내에 근로지 변경 가능
 - 희망근로지 신청 최종 마감 이후에는 근로지 변경 불가능
 -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지 변경 불가능
예) '일이 너무 많음', '적성에 맞지 않음' 등의 개인적인 사유
- 근로종료
 - 근로종료 시, '근로종료 요청서'를 작성하여 학생지원팀으로 제출
 - '근로종료 요청서'에 근로종료일,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입

□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 자격 관리

-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 준하여 관리
- 근로기관 점검을 통하여 장학생 및 기관 관리
 - 근로기관 현장 방문 및 전화·이메일 등을 통하여 주기적인 관리
 - 안전사고 예방, 출근부 입력 및 확인, 부정근로 방지, 기타 민원 접수 및 해결
- 근로기관 및 장학생의 국가근로 참여 제한
 - 부정근로 확정 학생이 근로한 근로지에 대하여 참여제한 가능
 - * 부정근로 확정 학생의 참여제한 기간만큼 근로지 참여제한
(예: 허위근로(4개 학기), 대리·대체근로(2개 학기))
 - 안전교육이수보고서 등록 및 승인 지연으로 인한 출근부 미 입력 사유 누적 발생시, 다음 학기 근로참여 제한 가능
 - 국가근로 선발학생이 근로를 취소하는 경우, 학기 중 타 근로지 선발 불가(집중근로의 경우 선발 가능)
 - 근로지에서 특이 사유 없이 희망근로지 신청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, 배정인원 취소 가능

□ 근로기간, 근로가능시간, 출근부 관련 관리

- 근로기간
 -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누어 선발
 - 근로기간은 예산 및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
 - 방학 중 근로 인원이 배정된 학기 중 근로지의 경우, 학기 중 근로지 학생과 근로지 담당자의 협의 하에 방학 중 근로 우선 선발 가능(배정된 방학 중 근로 인원 내에서 선발)
 - 방학 중 집중근로의 경우, 한국장학재단의 기준과 학교의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
- 근로시간
 - 학기 중 근로의 경우, 최대 640시간 이내에서 근로 가능
 - 교내 근로지의 경우 일일 근무시간은 09:00~17:00 가 원칙이나 사유서 제출 후 학생지원팀 승인에 따라 변동가능(단,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)
- 출근부
 - 출근부는 근로장학생 본인이 반드시 어플을 통하여 출퇴근 즉시 작성
 - * 휴대폰 분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고지를 통해 입력방식 변경 후 PC로 입력
 - 출근부 문제 발생 시 즉시 학생지원팀(☎ 033-760-2674, 2675)로 연락
 - 근로지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출근부 매일 확인
 - 출근부를 미 입력한 경우,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를 3일 이내 작성하여 본인 및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학생지원팀으로 제출, 학생지원팀에서 심사 후 근로 인정여부 결정 (사유 및 출근에 대한 증빙첨부)
 - * 출근부미입력사유서 양식은 미래학생복지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며, 제출 시 증빙서류 함께 제출

□ 근로장학기관 참여제한

- 기관의 장학생 관리·감독 미흡, 준수사항 위반, 안전사고 발생가능 등 다음의 문제점 발견 시 동 사업 참여제한 가능
 -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
 - 지속적인 안내에도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등 장학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
 - 장학생의 대체, 대리 근로 등 부정근로를 조장하는 경우
 -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 -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
 - 형사사건 연루, 성희롱,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
 - 배정된 장학생 및 관련기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,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
 -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 위배되는 경우
 - 이외에 대학과 재단이 판단하였을 때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, 내부문서로 사유를 작성·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

□ 근로장학생 참여제한

- 대학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 자격을 해하고 활동중지 및 참여제한을 할 수 있음
 - 장학생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 -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
 - 자퇴,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하거나, 학기 중 휴학을 하는 경우(정규학기 성적산출 후 다음학기 휴학을 위한 선�휴학자는 제외)
 - 부정근로가 적발 되는 경우
 - 장학생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,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
 -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
 - 이외에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, 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,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직전학기 상호평가 결과, 평점 70점 미만의 경우 다음 학기 근로 참여 제한

□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한 근로지 및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및 참여 제한

- 근로기관 점검을 통하여 장학생 및 기관 관리
 - 근로기관 현장 방문 및 전화·이메일 등을 통하여 주기적인 관리
 - 안전사고 예방, 출근부 입력 및 확인, 부정근로 방지, 기타 민원 접수 및 해결
- 근로기관 및 장학생의 국가근로 참여 제한
 - 부정근로 확정 학생이 근로한 근로지에 대하여 참여제한 가능
 - * 부정근로 확정 학생의 참여제한 기간만큼 근로지 참여제한(예: 허위근로(4개 학기), 대리·대체근로(2개 학기))
 - 국가근로 선발학생이 근로를 취소하는 경우, 학기 중 타 근로지 선발 불가(집중근로의 경우 선발가능)
 - 근로지에서 특이 사유 없이 희망근로지 신청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, 배정인원 취소가능
- 근로 운영 시,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벌점 제도 운영
 - 벌점 3점 누적 시, 다음학기 배정 제한(장학생), 배정인원 감축(근로기관) 가능

<표>

	내 용	별점	비 고
장 학 생	정당한 지시 불응, 근태 불량, 무단 결근	1~3	근로지 담당자가 사유서 제출 시
	출근부에 안전교육 이수 미입력	1	매 학기 초(3/9월) 출근부 마감 시 확인
	안전교육보고서 미제출	1	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
	부정근로 발견	3	재단/대학의 점검에서 발견 시 (즉시 제한)
기 관	학생에게 부당한 지시 (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심부름 등)	1~3	근로장학생이 사유서 제출 시
	선발 기한 지연	1	선발지연으로 국가근로 일정 차질이 생길 시
	안전교육 미실시	1	별점 부여 후, 안전교육 재실시
	월 출근부의 대학 미제출	1	매월 3일 이내 출근부를 대학으로 미제출 시
	근태관리 소홀	3	재단/대학의 점검에서 발견 시 (즉시 제한)

□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

- 매 월초에 전 기관에서 출근부를 모두 제출하면, 전체 근로장학생의 장학금 일괄 지급
- 장학금은 대학포탈에 등록된 개인 계좌로 지급
- 매 월 15일 전후로 장학금지급(화요일/목요일)
 - 기관의 출근부 제출 지연 시, 장학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음
 -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소속 장학생은 타 학과 학생보다 1주 정도 후에 지급 (각 대학에서 지급 처리과정 필요)

3.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

[국가근로장학금 사업담당자 현황]

성 명	직위	담당자 연락처	담당자 이메일	근로장학업무 이외 타 업무 수행 여부
권서윤	직원	033-760-2853	rkdekrn1116@yonsei.ac.kr	○